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6. 3. 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6년 2월 16일
- 나. 발 의 자 : 이용주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18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3. 4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이용주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흡연은 중독 가능성이 높고, 폐암,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.
- 특히, 임산부, 청소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, 도림천의 보행자길에서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(안 제5조제1항제6호)
- 영등포구 관내 하천(안양천, 도림천)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(안 제5조제1항제7호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,
- 현행 조례에서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, 「주택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터,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,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,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,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현재 도시공원 35개소를 비롯한 1,047개소<sup>1)</sup>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됨.
- ‘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’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살펴보면, 영등포구에서는 ‘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’라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2014.4.11.부터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전체 92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에서는 ‘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’라고 명시하여 조례에서 특정 장소(일정한 장소)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 따라서, ‘금연구역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위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 또한, 이미 시행중인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‘하천(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.) 연변의 보행자길’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

1)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(영등포구 보건지원과 자료, 2016.2월말 기준)

계(개소)	공원	버스 정류장	마을 마당	학교절대 정화구역	유치원 및 어린이집건물경계선 10m내	택시 승차대	지하철역 출입구	금연거리
1,047	35	504	31	43	300	38	92	4

안은, 안양천 및 도림천 보행자 길이 도시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나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라 「하천법」 적용을 받고 있어,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바, 하천변 보행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 개선에 기여할 것임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주 의원 대표발의)

발의년월일: 2016년 2월 12일

발 의 자: 이용주 의원 외 3명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## 1. 제안이유

- 흡연은 중독 가능성이 높고, 폐암,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.
- 특히, 임산부, 청소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, 도림천의 보행자 길에서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.

## 2. 주요내용

-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(안 제5조제1항제6호)
- 영등포구 관내 하천(안양천,도림천)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(안 제5조제1항제7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타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6.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
7. 하천(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) 연변의 보행자길

제8조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①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 ~ 5 (생 략)</p> <p>6. <u>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u></p>	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 ~ 5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구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 부터 10m 이내</u></p> <p>7. <u>하천(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) 연변의 보행자길</u></p> <p>8. <u>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u></p>
<p>제8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----- -----다만,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<u>제5호까지</u>의 장소에 는 이를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</p>	<p>제8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----- ----- ----- -----<u>제7호까지</u>의----- -----</p>